

[별표 3의2] <개정 2013.12.17>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광해방지사업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케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나. 케도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한	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없음 2)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공익용 산지는 제외하며, 임업용 산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	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3)·6) 및 제2호라목1) (2)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6) 나)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 2)를 준용한다.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